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8. 7. 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 1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8. 6. 13.
- 다. 상정일자 : 제13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위원회(2008. 7. 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과 「도로법」이 각각 2007.1.5, 2008.3.21 개정·공포되고,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2008.5.29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점용료 소액부징수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로법」 제90조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 조정
(체납금 3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조정함
-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조정된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
-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조례에 이관 규정함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지침)에 명시된 “사설안내 표지판” 문구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삽입하도록 함
- 점용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의 규정(6%)에 따르도록 함

다. 근거법령

-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90조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2항, 제26조의3 제3항, 별표2(점용료산정기준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636호(2008.5.29)

3. 검토보고의 요지 (한두호 전문위원)

-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7. 1. 5 개정됨에 따라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위 법규에 제정권이 위임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6.11.20개정 공포되어 상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안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2006.1.1 전문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안 제8조 제1항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라고 종전 「지방세법」 준용규정을 「국세징수법」 준용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 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라고 개정되었는데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정한 가산금 및 동법 제22조의 증가산금을 가산하는데 있어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산금 징수 적용대상을 종전에는 체납액 3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준용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증가산금 징수 적용대상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 안 제9조 제1항 중 “다만, 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라고 단서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 제3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 한다”라고 2004. 7. 20법 개정 시 단서가 추가로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안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라는 규정과 동조 제2항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세부 인상·인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중전화는 동결된 반면에 전주는 종전대비 500원이 증가된 37.03%, 지중배전용기기함, 주차측정기 등의 시설물은 종전 대비 750원이 증가된 37.5%가 상향 조정되었고,

둘째,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종전 대비 11,650원이 증가된 38.07%가 상향조정되었으며,

셋째,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시설물은 종전 대비 100원이 증가된 38.0%가 상향조정된 반면, 돌출간판은 종전 대비 30,000원이 감소된 33.9%가 하향 조정 되었는데 그 감소 사유는 다른 시설물에 비하여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행령 개정 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된 것으로 봅니다.

- 참고로 2008년도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및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2,088건에 39억 7,536만원이며, 앞으로 평균 조정률 38.0% 적용 시 세수 증대 효과는 있겠으나, 도로점용 시설물 관리자 및 점용대상자에게 그만큼 큰 부담이 늘어 날 것이므로 일시에 적용하기보다는 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이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